

##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제26조 및 「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·폐업 및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반송(수취인 불명, 이사감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15일

진도군



### 1. 공고내용

| 업체명<br>(대표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| 공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농업회사법인<br>주식회사<br>진도시골김치<br>(이*희, 이*진) |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<br>군내농공로 60 | 투자유치 입지보조금<br>교부결정 취소 및<br>보조금 반환 | - 「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<br>촉진 조례」 제26조<br>- 「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<br>촉진 조례」 제27조 |

2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
3. 공고기간 : 2025. 5. 15. ~ 2025. 5. 30. (15일간)

4. 기타 문의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투자유치팀(☎061-540-38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